

## 전북교육청과 공무원노동조합연대회의 간 단체교섭 결과 및 합의사항(제6차실무교섭)

부서명: 예산과 20건

순	연번	장	제	조	기존협약내용(2018.6.15.)	단체교섭 요구안(2020.4.18.)	검토결과			사용자 검토의견	실무교섭 결과 및 합의사항	
							수용	수정 수용	수용 불가	결과 (합의,유보,불가)		
										노사합의사항		
1	233		제4절 행정업무 개선	제53조【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①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 예산편성 시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①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 예산편성 시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수용	합의	
2	234				②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예산의 집행품의, 지출 원인 행위 및 지출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예산의 집행품의, 지출 원인 행위 및 지출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수용	합의	
3	235				③교육감은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합리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한다.	③교육감은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합리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한다.	○			▶ 수용	합의	
4	237				⑦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학교회계 사업 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집행품의, 지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⑤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학교회계 사업 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집행품의, 지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협의필요 연번 234번과 내용유사 검토 필요	절회	
5	238			제54조【예산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①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업무추진 성격의 집행내역 중 각종 협의회비 납부 등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①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업무추진 성격의 집행내역 중 각종 협의회비 납부 등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			▶ 수용	합의	
6	239				②교육감은 학교예산 운영과 관련된 지침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의견 제시가 있을 경우 수렴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교육감은 학교예산 운영과 관련된 지침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의견 제시가 있을 경우 수렴하도록 한다.	○			▶ 수정수용(기존협약유지)	합의	▶ 노측요구안 내용 수정 합의 교육감은 학교예산 운영과 관련된 지침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의견 제시가 있을 경우 협의수렴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7	255				③교육감은 각종 보고 및 통계자료 요구 시 충분한 보고 기한을 두어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공문에 표시하여 보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교육감은 학교회계와 관련하여 법정장부 이외의 장부(징수 결의서 등)는 별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		▶ 수용불가(절회요구)	합의	▶ 노측요구안 내용 수정 합의 교육감은 학교회계와 관련하여 법정장부 이외의 장부는 별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8	258_4				⑥교육감은 각급 기관장이 관용차량을 공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⑥교육감은 행정실의 행정직원이 행정의 전문성 향상 및 행정가로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4. 행정 실 소관 사업 외의 학교회계 예산 사업비 정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 수용불가(절회요구) 보고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관리운영권(직무명령권)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 대상임	유보	
9	264				⑭교육감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인원을 배치하는 각종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⑭학교 목적사업비 정산은 사업 추진 부서에서 처리하며, 집행 결과 보고 시 정산보고서 이외의 회계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		▶ 수용불가(절회요구) 사업 특성상 개별성에 따라 교육청 각 사업부서 자체 안내 및 운영 사항임	유보	
10	265					⑯목적사업비는 학교회계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교부한다.		○		▶ 수용불가(절회요구) 사업 특성상 개별성에 따라 교육청 각 사업부서 자체 안내 및 운영 사항임	유보	

순	연번	장	절	조	기존협약내용(2016.8.15.)	단체교섭 요구안(2020.4.13.)	검토결과			사용자 검토의견	실무교섭 결과 및 협의사항	
							수용	수정 수용	수용 불가		결과 (협의,유보,거절)	노사합의사항
11	266					⑯법인카드 모니터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등을 예 등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수용불가(철회요구) 지방재정법 제96조2(지방재정정보화)	유보	
12	267					⑮교육감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행정실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편성하도록 명시한다.			○	▶수용불가(철회요구) 단위학교에서 각급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일반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단위학교 차치 및 자율성과 관련한 학교자체의 권한사항임	유보	▶사측 의견 제시
13	268					⑯수익자 부담경비 정산 시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학교급식, 누리과정 등)에 대한 정산업무는 제외한다.			○	▶수용불가(철회요구) 학교급식비, 누리과정 등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지장체지원금, 자체제원 등 제원에 따른 정산 보고 필요	유보	▶노사 의견 제시 (연번 258_4, 연번 264, 연번 265, 연번 268)
14	289	제5절 수당제 도 개선	제63조【각종 수 당 등의 지급 확대】		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시 행정실 업무수당 신설에 대한 의견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교육부에 건의한다.	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시 행정실 업무수당 신설에 대한 의견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교육부에 건의한다.			○	▶수용	합의	
15	299					⑩교육감은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에 상응하는 수당이 초·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수용불가(철회요구) 관련법 위반으로 비교섭사항임	철회	
16	350			제69조【이전비 지급】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이전비와 국내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전보에 따른 이전비 지급 요청이 있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지급되도록 한다.			○	▶수정수용(내용수정)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전보에 따른 이전비 지급 요청이 있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되도록 한다.	합의	▶사측 내용수정으로 합의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전보에 따른 이전비 지급 요청이 있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되도록 한다.
17	369			제76조【임명지 원 등】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소신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법적 자문을 원하는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문하도록 협조한다.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소신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법적 자문을 원하는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문하도록 협조한다.			○	▶수용	합의	
18	376			제83조【장애인 당 신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시 공무원 본인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수당 지급에 대한 의견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교육부에 건의한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시 공무원 본인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수당 지급에 대한 의견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교육부에 건의한다.			○	▶수용	합의	
19	380			제85조【운전직 렬 운전업무 수 당 인상】	①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시 운전직렬 운전업무수당 인상에 대한 의견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교육부에 건의한다.	①교육감은 현재 학교근무자에만 지급되고 있는 특수직무수당을 기술정보수당과 병급이 되지 않아 기술직만 지급 받지 못하는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	▶수정수용(내용수정)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호제3항 각 호에서 등 영 별표 9 제1호 가목과 제11호 자목이 함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관련 의견을 교육부에 건의한다.	합의	▶사측 내용수정으로 합의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호제3항 각 호에서 등 영 별표 9 제1호 가목과 제11호 자목이 함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관련 의견을 교육부에 건의한다.

순	연번	장	월	조	기준협약내용(2018.8.15.)	단체교섭 요구안(2020.4.13.)	검토결과			사용자 검토의견	실무교섭 결과 및 합의사항	
							수용	수정 수용	수용 불가		결과 (합의, 유보, 철회)	노사합의사항
20	381					②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시 운전직별 운전업무수당 인상에 대한 의견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견의한다.	○			>수용	합의	

구분	안건
합의	12
유보	6
철회	2
계	20

2020. 9. 23.

전라북도교육청 대표위원 박종배 (서명)  
2020. 9. 23. 10:0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북교육청지부 대표위원 강주용 (서명)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위원 오용식 (서명)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청지부 대표위원 김종태 (서명)  
한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청지부 대표위원 황태학 (서명)